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經過와 主要特徵

韓相鎬*

차 례

I. 序

1.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背景
2. 立法經過의 要旨
3. 基本目標

II.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經過

1. 司法制度發展委員會
2. 大法院의 法律案 成案 및 立法 建議
3. 立法 經過

III. 司法制度改革法律의 要旨

1. 法院組織에 관한 事項
2. 人事制度에 관한 事項
3. 裁判制度에 관한 事項
4. 主要事項別 施行時期

IV. 司法制度改革立法의 特徵

1. 역사적인 改革作業

* 法院行政處 調查局長(서울民事地方法院 部長判事)

2. 범국민적인 司法制度改革作業
3. 가장 모범적인 制度改革作業
4. 자율적·능동적인 改革
5. 司法府에 대한 새로운 認識의 擡頭
6. 국민적인 共感帶 形成

V. 結

I. 序

1.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背景

19世紀末 近代 司法制度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 樹立後 현재에 이르기까지 司法制度의 골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

그 동안 司法府는 종래의 制度와 運營을 개선하여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그 결과 裁判, 登記, 戶籍 등 司法業務 전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産業化, 都市化, 專門化 및 國際化에 따른 國民意識과 社會與件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한 國民들이 만족할 정도로 공정하고 신속한 司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國民들로부터 충분한 信賴를 얻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司法府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司法改革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여 왔다. 즉, 1969년 4월 25일부터 1972년까지 大法院에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가 설치되어 활동하였고, 1979년 6월 26일부터 司法行政制度改善委員會가 설치되어 1993년 6월 28일까지 100차에 걸쳐 會議를 열어 司法行政制度의 改善을 위한 제방안을 토의하였

으며, 1993년 7월 5일부터는 司法制度審議委員會가 설치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大法院 法院行政處에서는 1990년 3월부터 司法政策研究審議官室을 설치하여 1992년 8월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司法政策研究作業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작년까지는 사실상 이미 거의 모든 문제와 사항에 관하여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契機가 주어지기만 하면 곧 改革作業이 發進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3년 3월 이후 政治, 經濟, 社會 각 분야에서 일게 된 改革의 물결에 맞추어 司法制度의 改革이 논의되고, 또한 같은 해 9월 27일 尹鎭大法院長이 就任辭를 통하여 汎國民的인 機構를 구성하여 司法制度를 개선하려는 구상을 밝힘을 계기로 하여, 大法院은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集積하여 온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司法制度 全般에 관한 改革作業에 착수하게 되었다.

2. 立法經過의 要旨

이에 따라, 大法院은 1993년 11월 3일 汎國民的인 機構로서 司法制度發展委員會를 구성하여 司法制度 改善에 관한 여러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司法制度發展委員會는 24個 事項에 관한 司法制度 改善方案을 大法院에 建議하였다. 그 후 大法院은 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建議된 내용을 바탕으로 法律案 草案을 작성한 후 關係機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大法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司法制度改革 法律案을 마련하였고, 1994년 4월 15일 이에 관한 立法意見을 國會에 송부하였다.

國會는 소관 常任委員會인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司法制度改革關聯法律案起草小委員會를 구성하여 大法院의 法律案에 더잡아 法制司法委員會의 司法制度改革 關聯 6件的 法律案을 成案한 후 이를 本會議에 上程함으로써 1994년 7월 14일 本會議에서 위 法律들이 통과되었다.

위 6件的 法律은 1994년 7월 26일 大統領의 署名을 거쳐, 다음날 官報에 게재됨으로써 公布되었다.

3. 基本目標

이와 같이 추진된 司法制度改革作業은 司法制度의 여러 불합리한 問題點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새로운 社會變化에 대비하려는 데에 基本目標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國民들에 대한 司法서비스를 확대함과 아울러 專門性을 확충하는 등 司法서비스의 量과 質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社會의 民主化와 國民의 人權保障을 위한 法治主義의 理想이 실현될 수 있도록 司法權의 獨立을 공고히 하는 한편 司法府內의 民主化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國家競爭力을 강화하고 法律文化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률적인 法院組織을 갖추는 것을 세부적인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國民의 便益과 權利의 보장,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專門性과 能率性을 갖춘 裁判制度의 실현 및 司法의 民主化와 獨立性의 확보 등 司法制度의 여러 이상을 골고루 구현함으로써, 國民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司法府·國民으로부터 신뢰받는 튼튼한 司法府가 될 수 있도록, 司法府의 人的·物的 組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법인 法院組織法 등 關聯法律과, 國民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國家 및 地方自治行政에 관한 爭訟節次를 규정하고 있는 行政訴訟法을 개정하고, 아울러 大法院이 法律審으로서의 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法律關係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을 制定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1993년 11월 3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가 구성되어 1994년 7월 27일 司法制度改革法律이 공포되기까지의 立法經過 및 위 法律의 要旨에 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司法制度改革立法이 다른 法律들의 立法節次와 달리 갖고 있는 特徵에 관하여 살펴 본다.¹⁾

1) 司法制度改革作業의 詳細한 經過에 관하여는 大法院, 司法制度改革白書(上)·(下)를 各 參照하기 바란다.

II.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經過

1. 司法制度發展委員會

가.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構成

a) 委員의 委囑

1993년 11월 3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는 委員長 玄勝鍾 前國務總理, 副委員長 咸正鎬 辯護士 및 尹厚淨 梨花女子大學校 總長²⁾, 主務委員 李容勳 法院行政處 次長³⁾, 幹事委員 權誠 首席司法政策研究審議官을 비롯하여 法官 6명, 法院公務員 1명, 檢察 人士 2명, 辯護士 5명, 學界 人士 6명, 國會議員 2명, 行政府 公務員 2명, 言論界 人士 6명, 社會團體 人士 1명 合計 31명의 社會 各界를 대표하는 人士들이 委員으로 위촉됨으로써 正식으로 발족하였고, 명실공히 법국민적인 機構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 후 1994년 1월 14일 委員중 일부가 개편되어 法院公務員이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全體委員의 수가 32명으로 증원되었다.

b) 全體委員會 · 分科委員會

司法制度發展委員會는 委員 全員으로 구성된 全體委員會와 一部の 委員으로 구성된 分科委員會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分科委員會는 全體委員會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第1分科委員會, 第2分科委員會 및 第3分科委員會의 3개 分科委員會로 구성되었는 바, 法院組織 및 이에 관련된 사항, 法官人事制度 및 이에 관련된 사항, 裁判制度和 節次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각각 분장하여 심의하였다.

2) 委員으로 委囑된 후 1993. 12. 20. 副委員長으로 委囑되었다.

3) 現在는 大法官이다.

c) 研究室

委員會에 회부할 안전의 사전연구와 검토, 委員會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무적 처리 및 委員會의 활동 등에 관한 홍보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補助機關으로서 研究室을 설치하였다. 研究室은 室長인 權誠 首席司法政策研究審議官을 비롯하여 常任研究員 7명과, 非常任研究員 4명 합계 12명의 法官으로 구성되었다.

나.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審議對象 案件

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審議對象으로 다루어진 案件은 大法院長이 부의한 26개의 안전과 委員의 動議에 의하여 채택된 3개의 안전 합계 29개이다.

a) 大法院長이 附議한 案件

1) 法院組織에 관한 事項

- 가) 高等法院支部의 설치
- 나) 法官會議의 立法化
- 다) 常設簡易法院의 설치
- 라) 專門法院의 설치
- 마) 서울民·刑事地方法院의 통합 및 合議支院의 地方法院 개편
- 바) 大法院의 豫算案 要求權
- 사) 法院警察의 창설
- 아) 司法(政策)研究院의 설치
- 자) 大法院의 法律案 提案權
- 차) 登記·戶籍廳의 설치

2) 人事制度에 관한 사항

- 가) 判事任用資格의 강화
- 나) 副判事制度의 신설
- 다) 司法補佐官制度

- 라) 法官人事委員會制度
- 마) 法官의 勤務評定制度
- 바) 法官職級制度의 개선
- 사) 地域別(法院別) 法官任用制
- 아) 司法研修制度의 개선
- 자) 元老法曹人力の活用方案

3) 裁判制度에 관한 사항

- 가) 行政訴訟의 審級構造
- 나) 特許訴訟의 審級構造
- 다) 上告制度의 개선
- 라)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
- 마) 法院侮辱行爲에 대한 제재
- 바) 第1審의 構造調整
- 사) 民事抗訴審의 事後審化

b) 委員이 提出한 案件

-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方式(金昌國 委員)
- 法官의 外部機關 派遣禁止(金昌國 委員)
- 不拘束裁判의 原則 - 起訴前 保釋制度(劉承三 委員)

다.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活動

a) 委員會 審議를 위한 研究室의 準備 活動

1) 審議對象案件 研究·檢討

가) 大法院長이 부의한 審議對象案件 26개에 관하여 연구·검토하여, 1993년 11월 25일 審議對象案件 중 12가지를 주제로 하여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審議對象案件 檢討資料 第1輯'을 발간하고, 같은 해 12월 9일 나머지 16가지의 審議對象案件을 주제로 하여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審議對象案件 檢討資料 第2輯'을 발간하는 한편 그 결과를 第1,2,3分科委員會에 보고하였다.

나) 金昌國 委員 및 劉承三 委員이 동의한 3개의 審議對象案件에 관하여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第1,3 分科委員會에 각 보고하였다.

2) 各種 意見收斂 節次 實施

가) 開放型 意見調查

1993년 10월 23일부터 1993년 11월 15일까지 法官, 5級 이상의 法院一般職, 檢事, 辯護士, 法學教授, 法曹出入記者, 司法研修生 全員 合計 6,671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司法制度改革의 問題點과 그에 대한 改善方案에 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開放型 意見調查를 실시하였다.

調查結果 559명이 意見を 회신함으로써 8.38%의 응답률을 보였는 바, 이 意見調查結果를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委員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안건 토의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였고, 앞으로 장기적인 司法制度研究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 法官들 대상 設問調查

1993년 1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및 같은 달 13일부터 1994년 1월 6일까지 2회에 걸쳐 全國法官 1,108명을 대상으로 하여 大法院長이 부의한 審議對象案件에 대한 法官意見調查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第1回 意見調查는 98.85%의 회신률, 第2回 意見調查는 90.25%의 회신률을 보였는 바, 각 사항별 분석결과를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委員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안건 토의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다) 常設簡易法院의 設置에 관한 意見調查

1993년 11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全國의 辯護士 2,695명을 대상으로 하여, 簡易法院 設置에 관한 意見, 簡易法院 勤務意思 및 勤務希望地·勤務時間·報酬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設問으로 작성하여 意見調查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623명이 회신을 보내어 23.1%의 응답률을 보였는 바, 그 분석결과를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委員들에게 배포함으로써 簡易法院의 設置에 관한 안건 토의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市·郡法院制度를 立法化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고, 필요시에는 市·郡法院에 근무할 判事의 人力需給에 관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라) 法官 이외의 職域에 대한 意見調查

專門 輿論調查機關인 株式會社 韓國리서치 社會調查研究所에 의뢰하여, 1993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2월 27일까지 서울 지역의 檢事, 辯護士, 法學教授, 法院 一般職 公務員을 대상으로 하여, 定量的인 標本調查의 方法(檢事 120명, 辯護士 100명, 法學教授 60명, 法院 一般職 公務員 120명 합계 400명)을 통하여, 大法院長이 부의한 審議對象案件 26개 중 法官會議의 立法化, 法官人事委員會制度, 法官의 勤務評定制度, 法官職級制度의 改善, 地域別(法院別) 法官任用制, 元老法曹人力의 活用方案 6개 안건을 제외한 20개 안건에 관한 意見調查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株式會社 韓國리서치 社會調查研究所는 1993년 12월 27일 '司法制度 改革方案에 대한 法曹界人士 意見調查 結果 報告書'를 제출하였고, 이를 司法制度發展委員會 委員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안건 토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마) 法官세미나

1993년 12월 23일 09:30부터 18:00까지 大法院 大會議室에서 各級法院을 대표한 法官 27명(高等法院 部長判事 3명, 地方法院 部長判事 7명, 高等法院 陪席判事 4명, 地方法院 單獨判事 7명, 地方法院 陪席判事 6명) 및 法院 公務員 代表 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常設簡易法院의 설치, ②上告制度의 개선, ③法官任用資格의 강화 및 副判事制度의 도입, ④法官의 職級昇進制度 改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 후 法官세미나의 經過 및 토의내용을 정리하여 1994년 1월 28일 法官세미나 結果報告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其他 資料 發刊 및 配布

가) 司法制度發展의 理論과 方法

1994년 1월 22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 研究室이 작성한 審議對象案件 檢討資料의 이론적인 기초를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한 후, 法院, 國會, 憲法裁判所, 法務部, 檢察廳, 法科大學, 言論機關 등에게 총 2,267부를 배포하였다.

나) 上告制度의 개선에 관한 檢討資料

1994년 1월 22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研究室에서 上告制度의 개선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한 후, 法院, 國會, 憲法裁判所, 法務部, 檢察廳, 法科大學, 言論機關 등에게 총 1,359부를 배포하였다.

b) 委員會의 활동

委員會가 개최된 일정별로 委員會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第1次 全體委員會

1993년 11월 10일 14:00 大法院 大會議室에서 第1次 全體委員會가 개최되어 '司法制度發展委員會運營規程'을 채택하였고, 第1,2,3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大法院長이 부의한 안건들을 주제별로 각 分科委員會에 分掌하도록 하였다.

第1分科委員會는 姜喆善 위원, 金光雄 위원, 金基錫 위원, 金英泰 위원, 金昌國 위원, 金哲洙 위원, 李德秀 위원(李德秀 위원은 후에 姜炳浩 위원으로 교체되었다), 河哲容 위원, 崔東鎬 위원, 幹事委員 합계 10명으로 구성되었고, 大法院長이 부의한 안건 중 法院組織에 관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第2分科委員會는 朴憲基 위원, 徐元宇 위원, 孫鳳鎬 위원, 沈宇永 위원, 李東洽 위원, 李永模 위원, 李種奭 위원, 張明秀 위원, 洪性宇 위원, 幹事委員 합계 10명으로 구성되었고, 大法院長이 부의한 안건 중 人事制度에 관한 9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第3分科委員會는 金賢哲 위원, 金滉植 위원, 宋相現 위원, 安秉勳 위원, 劉承三 위원, 李洋吉 위원, 李載厚 위원, 韓勝憲 위원, 幹事委員 합계 9명(후에 申榮福 위원이 추가되어 10명으로 增員되었다)으로 구성되었고, 大法院長이 부의한 안건 중 裁判制度에 관한 7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2) 各 分科委員會 第1,2次 會議

가) 第1分科委員會

第1分科委員會 第1次 會議는 1993년 11월 23일 14:00 分科委員 9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委員長으로 金哲洙 위원을 호선하였고, ①法官會議의 立法化, ②常設簡易法院의 설치, ③高等法院支部의 설치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第1分科委員會 第2次會議은 1993년 12월 14일 14:00 分科委員 8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專門法院의 設置, ②서울 民·刑事 地方法院의 통합, ③서울市內 合議支院의 地方法院 改編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金昌國 위원은 ①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方式, ②大法院의 業務減少 方案, ③法官의 外部機關 派遣禁止, ④法院行政處長의 國務會議 出席·發言權을 의안으로 다룰 것을 動議案으로 제출하였다.

나) 第2分科委員會

第2分科委員會 第1次會議은 1993년 11월 25일 14:00 分科委員 9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委員長으로 徐元宇 委員을 호선하였고, ①判事任用資格의 강화, ②副判事制度의 신설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第2分科委員會 第2次會議은 1993년 12월 16일 14:00 分科委員 8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司法補佐官制度, ②法官人事委員會 制度 및 第1次會議에서 속행된 判事任用資格의 강화와 副判事制度의 신설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다) 第3分科委員會

第3分科委員會 第1次會議은 1993년 11월 30일 14:00 分科委員 9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委員長으로 宋相現 委員을 호선하였고, ①行政訴訟의 審級構造, ②特許訴訟의 審級構造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第3分科委員會 第2次會議은 1993년 12월 21일 14:00 分科委員 8인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上告制度의 改善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劉承三 위원이 제안한 '不拘束裁判의 原則'을 審議對象案件으로 채택하였다.

3) 第2次 全體委員會

1993년 12월 28일 14:00 大法院 大會議室에서 개최된 第2次 全體委員會는 3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그 동안의 分科委員會 活動經過를 보고 받고, 아래 8개의 안건에 관하여 改善案을 의결하였다.

- 가) 法院組織에 관한 사항 : ①法官會議의 立法化
②常設簡易法院의 설치
③專門法院의 설치
- 나) 人事制度에 관한 사항 : ①判事任用資格의 강화
②副判事制度의 도입
③法官人事委員會制度
- 다) 裁判制度에 관한 사항 : ①行政訴訟의 審級構造
②特許訴訟의 審級構造

4) 각 分科委員會 第3,4次 會議

가) 第1分科委員會

第1分科委員會 第3次 會議은 1994년 1월 20일 14:00 分科委員 8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司法府의 豫算案 要求權, ②法院警察制度, ③司法(政策)研究院의 설치 및 第2次 會議에서 속행된 서울民·刑事地方法院의 통합과 合議支院의 地方法院 改編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金昌國 위원이 第2次 會議에서 動議한 안건 중 ①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方式, ②法官의 外部機關 派遣禁止를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③大法院의 業務減少方案 및 ④法院行政處長의 國務會議 出席·發言權에 대하여는 金昌國 위원이 動議案을 철회하였다.

第1分科委員會 第4次 會議은 1994년 2월 3일 14:00 分科委員 7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大法院의 法律案 提案權, ②登記·戶籍廳의 設置, ③大法院長 및 大法官 任命方式, ④法官의 外部機關 派遣禁止 및 第1次 會議에서 속행된 高等法院支部設置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나) 第2分科委員會

第2分科委員會 第3次 會議은 1994년 1월 13일 14:00 分科委員 10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法官職級制度의 改善, ②地域別(法院別) 法官任用制度 및 第2次 회의에서 續行된 司法補佐官制度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第2分科委員會 第4次 會議은 1994년 1월 27일 14:00 分科委員 8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司法研修制度의 改善, ②法官의 勤務評定制度, ③元老法曹人力의 活用方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다) 第3分科委員會

第3分科委員會 第3次會議은 1994년 1월 18일 14:00 分科委員 9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 바, 韓勝憲 위원이 委員長 代行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①拘束令狀 實質審査制度 및 不拘束裁判의 原則, ②法院 侮辱行爲에 대한 制裁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第3分科委員會 第4次會議은 1994년 2월 1일 14:00 分科委員 8명 및 主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 바, 韓勝憲 위원이 委員長 代行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①第1審의 構造調整, ②民事抗訴審의 事後審化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5) 第3次 全體委員會

가) 1994년 2월 16일 14:00 大法院 大會議室에서 개최된 第3次 全體委員會는 委員長을 비롯한 30명의 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그 동안의 分科委員會 活動經過를 보고 받은 후, 第2次 全體委員會에서 심의되지 아니한 21개의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나) 그 결과, 아래 16개의 안건에 관하여 改善方案을 의결하였다.

- ① 法院組織에 관한 事項 : ㉠高等法院支部의 설치
 - ㉡서울민·刑事地方法院의 통합
 - ㉢司法府의 豫算案 要求權
 - ㉣司法(政策)研究院의 설치
 - ㉤大法院의 法律案 提案權
- ② 人事制度에 관한 사항 :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方式
 - ㉧法官의 外部機關 派遣禁止
 - ㉨法官職級制度의 개선
 - ㉩司法補佐官制度
 - ㉪法官의 勤務評定制度
 - ㉫元老法曹人力の 活用方案
- ③ 裁判制度에 관한 사항 : ㉬上告制度의 개선
 -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
 - ㉮不拘束裁判의 原則(起訴前 保釋制度)
 - ㉯第1審의 構造調整
 - ㉺民事抗訴審의 事後審化

다) 나아가, 나머지 5개의 안건, 즉 ①司法研修制度의 개선, ②登記·戶籍廳의 설치, ③法院警察의 창설, ④地域別(法院別) 法官任用制度, ⑤法院侮辱行爲에 대한 制裁에 관하여는 이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의 도입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그 후 第3次 全體委員會에서는, 第2,3次 全體委員會를 통하여 의결된 24개 안건에 관한 改善方案이 포함된 司法制度 發展을 위한 '建議文'을 채택하였고, 委員長의 명의로 '國民들께 드리는 글'을 공표한 후, 大法院長에게 위 '建議文'을 전달함으로써, 그 활동을 모두 종료하였다.

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建議 內容

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채택한 司法制度의 개선에 관한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國民의 便益을 보다 널리 保障하기 위한 建議

1) 簡易한 常設法院의 設置와 관련하여,

가) 전국 각지에 簡易한 常設法院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나) 우선적으로는 현재의 巡廻審判所 중 일부를 순차로 개편하여 簡易한 常設法院으로 하고 判事를 常駐시키며, 이를 순차로 확대하고,

다) 簡易한 常設法院의 判事는 상당한 年齡과 經歷의 辯護士 資格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2) 高等法院支部의 設置와 관련하여,

濟州地域에 光州高等法院 濟州支部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光州高等法院 濟州支部의 성과를 보아 設置 여부를 검토한다.

3) 서울民·刑事地方法院 통합과 관련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과 서울刑事地方法院을 統合한다.

4) 行政訴訟의 審級構造와 관련하여,

가) 行政訴訟事件의 第1審을 地方法院의 管轄로 하고,

나) 行政訴訟事件의 第1審 事物管轄은 單獨管轄과 合議管轄을 탄력적으로 運用하며,

다) 行政訴訟事件의 上訴審構造는 일반 民·刑事事件과 동일하게 하고,

라) 行政審判은 任意的 前置節次로 한다.

b) 國民의 人權을 더욱 守護하기 위한 建議

1) 拘束制度和 관련하여,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를 도입하되 다만, 判事의 被疑者審問은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

2) 不拘束裁判의 原則과 관련하여,

起訴前 保釋制度를 導入한다.

c) 裁判의 公正性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建議

1) 判事의 任用制度和 副判事制度和 관련하여,

가) 判事의 任用資格을 강화하여, 判事任用資格을 7년 이상의 法曹經歷을 가진 자로 정하되, 그 운영에 있어 과도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 判事任用資格의 강화에 따라 司法研修院 修了者를 副判事로 임용하고, 判事任用에 필요한 經歷期間의 경과 후 判事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副判事의 業務內容은 副判事의 수련필요성 및 法院의 人力需給 事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法官에 대한 勤務評定과 관련하여,

法官에 대한 勤務評定制를 도입하되, 다만 評價의 公正性 및 客觀性, 法官의 獨立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시기, 評定대상 및 評定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 第1審의 構造調整과 관련하여,

가) 判事任用資格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民事事件에 관하여는, 訴價에 의한 合議·單獨의 구별을 폐지하여 모두 單獨事件으로 하고, 다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裁定節次를 통하여 合議部에서 처리하되, 豫測可能性과 法的安定性이 확보되도록 大法院規則 등으로 裁定基準을 마련하며,

나) 刑事事件에 관하여는, 事物管轄의 기준이 되는 法定刑의 범위를 조정하여 合議事件의 범위를 축소한다.

4) 民事抗訴審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判事任用資格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가) 民事抗訴審이 事後審이 되도록 항소이유를 法定하되 事實誤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나) 抗訴人으로 하여금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며,

다) 抗訴審의 심판범위를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항소이유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라) 無資力한 抗訴人을 위하여 訴訟救助 등 法律扶助制度를 대폭 활성화한다.

5) 濫上告의 審査制度和 관련하여,

과거의 上告許可制의 단점을 보완하고 事實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전제하에, 無益한 濫上告를 거를 수 있는 濾過裝置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大法官을 일부 증원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6) 特許訴訟의 審級構造와 관련하여,

特許訴訟의 審級構造를 개편하여, 事實審을 高等法院에서 관할하게 하고, 高等法院의 判決에 대하여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도록 한다.

7) 司法補佐官制度和 관련하여,

(가) 司法補佐官制를 도입하고,

(나) 司法補佐官의 직무범위는 判事의 본질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야에 관하여 判事에 대한 異議節次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8) 元老法曹人力の 활용과 관련하여,
元老法曹人力を 簡易한 常設法院의 判事로 활용한다.

d) 司法權의 獨立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建議

1) 司法府의 豫算案要求權과 관련하여,

政府가 法院의 歲出豫算 要求內容을 수정하는 경우 大法院長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法院의 歲出豫算 要求內容을 豫算案에 附記하며, 國會가 法院의 歲出豫算額을 증액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명기하여 國會에 제출하도록 法律에 규정을 둔다.

2) 大法院의 法律案提出權과 관련하여,

현행 憲法의 범위 내에서는, 大法院이 法院의 組織, 人事, 裁判節次, 登記, 戶籍 등 法院의 업무에 관련된 法律案을 國會에 송부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法律로 규정한다.

3) 判事の 職級과 관련하여,

가) 高等法院 部長判事 이하 職級の 모든 判事に 대하여 單一號俸制(高等法院 部長判事の 昇進年數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判事에게도 高等法院 部長判事に 상당하는 수준의 處遇를 적절히 보장하는 내용의 號俸制)를 채택하고,

나) 高等法院 判事와 地方法院 單獨判事の 순환보직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다) 高等法院 部長判事와 地方法院長의 循環補職을 실시한다.

4) 法官人事委員會와 관련하여,

法院組織法에 法官人事委員會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法官人事委員會의 성격은 자문기구로 하며, 위원수는 11명 내지 15명으로 하고, 法官, 高等法院長, 地方法院長 등으로 구성한다.

5) 法官會議와 관련하여,

法院組織法에 法官會議의 설치근거를 두고, 法官會議 성격은 諮問機構로 하며, 전국규모의 法官會議는 두지 아니한다.

6)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方式과 관련하여,

가) 현행의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임명방식에 의할 경우 大法院判決 등에 있어서 임명권자 등의 영향력 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法官推薦會議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이나 國會 청문회절차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앞으로 大法院이 적절한 방법으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여 주고,

나) 法院組織法에 규정된 司法政策諮問委員會를 大韓辯護士協會長을 포함시켜 조속히 구성하여 大法官의 임명제청에 앞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며, 다만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大韓辯護士協會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한다.

7) 法官의 外部機關 派遣制限과 관련하여,

法院組織法 외의 다른 法律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法官의 外部機關 派遣勤務를 허용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法官의 派遣勤務를 금지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法院組織法에 두도록 한다.

e) 法律文化의 發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建議

1) 司法研究院의 설치와 관련하여,

가칭 '司法研究院'을 설치하되, 司法研修院, 韓國法學院, 大學校 등 다른 외부연구기관과의 협조관계도 고려하여 업무내용을 결정한다.

2) 專門法院의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지방법원급의 行政法院을 설치한다.

2. 大法院의 法律案 成案 및 立法 建議

가.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建議案에 대한 意見收斂

a) 法院行政處 主催 公聽會

大法院에서는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建議案을 수용하여 이를 제도로서 구체화함에 앞서, 그 동안 각계에서 개진된 의견 및 國民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4일 司法研修院 소강당에서 法院行政處 주최로 '司法制度發展方案에 관한 公聽會'를 개최하였다.

公聽會는 ①第1主題 : 司法制度發展의 理論과 方法, ②第2主題 : 專門法院의 設置 및 特許訴訟의 審級構造, ③第3主題 : 判事任用制度의 改善 및 副判事制度 및 ④第4主題 : 上告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하여 진행되었는 바, 지정방청인으로 141명(法官 48명, 檢事 2명, 法院公務員 46명, 教授 7명, 司法研修生 17명, 행정부처·서울특별시·憲法裁判所·변리사·세무사·刑事政策研究院·經濟正義實踐聯合⁴⁾ 등 21명) 및 일반방청인으로 67명(法官 5명, 法院公務員 3명, 辯護士 10명, 一般人 49명) 합계 208명의 방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09:35부터 18:15까지 진지하게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b) 外部機關 主催 公聽會·심포지엄

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1994년 1월 24일 大韓서울商工會議所에서 特許審判制度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994년 1월 25일 大韓辯護士協會에서 上告許可制度(上告審査制)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994년 2월 26일 民事訴訟法學會에서도 上告制度의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司法制度發展委員會가 활동을 마친 이후 1994년 4월 1일 經實

4) 이하 약칭 經實聯이라 한다.

聯, 1994년 4월 22일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및 1994년 6월 3일 經實聯 科學技術委員會에서 공청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 동안 위 公聽會 및 심포지엄에 法官들이 主題發表者, 討論者 또는 傍聽人으로 참석하여 個別的인 意見을 제시하였고, 大法院에서는 위 公聽會 및 심포지엄에서의 토의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立法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였다.

나. 大法院의 法律案 草案 作成

a) 實務陣의 구성

1994년 3월 7일 崔鍾泳 法院行政處長을 비롯하여 6명의 法院行政處 내의 간부들로 政策委員會를 구성하여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建議案을 입법화하기 위한 절차, 입법의 기본방향 및 法律案의 내용에 관한 정책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法院行政處 소속 법관들로 實務研究陣을 구성하고 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건의한 사항별로 주무 실무자를 지정하여 法律案의 草案 및 檢討資料를 작성하였다.

b) 立法方向의 설정

大法院의 實務陣에서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法律案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政府立法의 방법 대신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國會를 통한 議員立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議員立法의 방안을 택하게 된 것은, 改革立法의 내용이 司法制度全般에 걸쳐 있고, 이 작업이 司法史에 획을 긋는 중요한 작업일 뿐 아니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 및 公聽會 등을 통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司法制度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c) 法律案 草案의 作成

1) 大法院에서 작성한 法律案의 草案은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建議案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다만, 抗訴審의 구조조정에 관하여는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여 法律案의 작성은 유보하였고, 그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副判事制度에 관하여는 單獨判事의 職務權限을 조정하고 豫備判事制度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등 建議案의 내용을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建議案의 기본적인 취지 및 내용은 모두 그대로 法律案에 반영하였다.

2) 또한, 관계기관과는 사전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異見을 해소하여 法律案 草案을 성안하려 하였는 바, 특히 特許訴訟의 審級構造改善에 관하여는 特許廳의 책임자 및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法律案 草案을 成案하였다.

3) 그 결과, 아래와 같이 11개의 法律에 관한 改正案 및 制定案의 각 草案을 작성하게 되었다.

-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各級法院判事定員法中改正法律(案)
- 法官의報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 上告審節次에 관한特例法(案)
- 行政訴訟法中改正法律(案)
- 特許法中改正法律(案)
-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
- 意匠法中改正法律(案)
- 商標法中改正法律(案)

다. 關係機關 意見照會

大法院에서는 위 法律案 草案을 작성한 후 바로 1994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3월 30일까지 사이에 經濟企劃院, 法務部, 法制處, 財務部, 商工資源部(特許廳) 및 大韓辯護士協會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위 기관들은 같은 해 4월 4일부터 같은 해 4월 16일까지 사이에 의견을 회신하였다.⁵⁾

5) 다만, 大韓辯護士協會는 法院組織法 改正案에 관하여는 같은 해 6. 9., 行政訴訟法 改正案에 관하여는 같은해 6. 28. 意見을 回信하였다.

라. 大法院의 法律案 成案

a) 기본 골격

大法院에서는 위 외부관계기관의 회신의견 및 각급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3월 말경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法律案 草案을 재검토한 후, 大法院의 法律案 假案을 작성하였다.

위 法律案 假案은 위 法律案 草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다만 刑事訴訟法 및 特許訴訟의 審級構造의 개선에 관하여는 法律案의 草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法律案의 내용에서 유보하거나 이를 대폭 수정하였다.

b) 刑事訴訟法 改正案

刑事訴訟法 改正案 草案의 주요골자는 구속전 令狀實質審査制度 및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被疑者 釋放制度(이른바 起訴前 保釋制度)였는 바, 法務部에서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찬성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刑事訴訟法 전반에 걸친 改正案을 政府立法으로 추진하여 1994年 定期國會를 통하여 입법화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立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大法院의 司法制度 改革法律案에서는 이를 유보하였다.

c) 特許訴訟의 審級構造 改善案

特許訴訟의 審級構造 改善에 관하여는 위 法律案 草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法院組織法 및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을 개정하기로 特許廳과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위 法律案 草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法律案 草案에 관하여 特許廳에 공식적인 의견을 조회한 결과, 特許廳에서는 내부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당초의 合意案을 거부하고, 技術判事制度의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高等法院級의 特許法院을 신설하는 내용의 修正案을 제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法院으로서는 司法制度發展委員會가 건의한 바에 따라 違憲의 소지를 없애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法律을 개정하기로 하여,

特許廳 抗告審判의 審決에 대하여 서울高等法院에 소송을 제기하고 高等法院의 判決에 대하여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法院組織法 改正案 假案을 마련하고,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에 대하여는 改正案을 유보하였다.

d) 大法院 法律案의 確定

결국, 大法院이 法律案 假案으로 작성한 法律 改正 및 制定案은 ①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②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③各級法院判事定員法中改正法律(案), ④法官의報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⑤上告審節次에 관한特例法(案), ⑥行政訴訟法中改正法律(案)이다.

大法院은 1994년 4월 14일 09:30부터 17:00까지 大法官會議室에서 大法院長 및 大法官 全員이 참석한 가운데 大法官會議를 개최하여, 위 法律案 假案을 議案番號 議決 第20號 내지 第25號로 상정하여 심도있게 토의하였고, 그 결과 위 法律案 假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大法院의 法律案으로 확정하였다.

마. 大法院 法律案의 國會 送付

1994년 4월 15일 大法院長은 國會議長에게 大法官會議를 거쳐 확정된 위 大法院 法律案을 송부하고, 아울러 위 法律案이 입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公文을 발송하였다.

3. 立法 經過

가. 司法制度改革關聯法律案起草小委員會의 구성

a) 國會議長은 1994년 4월 16일 大法院에서 송부한 法律案을 소관 상임 위원회인 法制司法委員會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b) 第167回 國會(臨時會) 第1次 法制司法委員會⁶⁾에서는 大法院이 成案

6) 당시 委員長은 玄敬大 議員이었다.

한 위 6건의 法律 改正 및 制定案에 관한 심의 및 기초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與·野 합의하에 5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司法制度改革關聯法律案起草 小委員會(이하 “小委員會”라고 한다)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人選은 與·野 幹事에게 위임하였다.

c) 1994년 5월 13일 與·野 幹事間의 협의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였는 바, 委員長 李仁濟 의원을 비롯하여 姜在涉 의원, 丁璋鉉 의원, 姜秀淋 의원 및 鄭璣浩 議員이 선임되었다.

나. 小委員會 第1,2次 會議

a) 小委員會는 1994년 5월 19일 法制司法委員會 小會議室에서 第1次 會議를 갖고, 大法院 關係者로부터 6건의 大法院 法律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기본 일정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 등에게 大法院 法律案을 검토하여 司法制度改革關聯法律案起草資料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b) 이에 따라, 法制司法委員會의 專門委員·立法審議官 및 立法調查官은 大法院 法律案에 관하여 1994년 5월 14일 經濟企劃院, 法務部, 法制處, 內務部, 商工資源部(特許廳) 및 總務處에 의견조회를 하여 같은 해 5월 23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사이에 의견을 회신 받는 한편, 大法院 實務者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 6건의 法律案에 관한 起草資料를 작성하였다.

c) 小委員會는 1994년 6월 20일 10:30부터 16:00까지 法制司法委員會 小會議室에서 第2次 會議를 갖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위 6건의 司法制度改革關聯法律案 起草資料에 관하여 法院案, 改正理由 및 各界 意見을 설명 받은 후, 각 法律案 條項別로 개정이유 및 필요성, 法院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심도 있게 逐條審議하였다.

그 결과, 小委員會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관계기관에서 이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개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중점적으로 토의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외부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法制司法委員會의 명의로 公聽會를 개최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다. 法制司法委員會 公聽會(司法制度改革關聯立法에 관한 公聽會)

a) 1994년 6월 24일 第168回 國會(閉會中) 第1次 法制司法委員會는 司法制度改革關聯立法에 관한 公聽會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b) 그리하여, 1994년 7월 1일 11:34부터 20:18까지 法制司法委員會 會議室에서 第169回 國會(臨時會) 第1次 法制司法委員會⁷⁾를 열고 ①特許訴訟의 審級構造, ②法院組織法の 改正方向, ③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를 주제로 하여 公聽會를 진행하였다.

c) 特許訴訟의 審級構造에 관하여는 필자를 비롯하여 洪泳杓 特許廳 審査2局長, 鮮于仲皓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金良午 大韓辯理士會 총무이사 및 宋永植 변호사가 陳述人으로 발표하였고, 나머지 주제에 관하여는 필자를 비롯하여 孟廷柱 經濟企劃院 總括審議官, 成光元 法制處 行政審判管理官, 趙柄倫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朴元淳 변호사가 陳述人으로 발표하였으며, 陳述人들의 발표에 이어 法制司法委員들로부터의 질의 및 이에 대한 陳述人들의 답변이 있었다.

d) 그리고 第169回 國會(臨時會)에서는 法制司法委員會 委員이 교체됨에 따라 小委員會를 재구성하였는 바, 종전의 위원 중 丁璋鉉 의원 및 姜秀淋 의원이 金榮駟 의원 및 張基旭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라. 小委員會 第3,4次 會議

a) 小委員會는 1994년 7월 5일 10:00 法制司法委員會 小會議室에서 第3次 會議를 개최하였는 바, 전문위원이 새로이 小委員會의 위원으로 선임된 金榮駟 의원 및 張基旭 의원에 대하여 第2次 小委員會의 法律案 起草資料 심의결과 및 공청회 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小委員會 위원들은 그 동안 異見이 표출된 사항별로 향후의 입법방향을 토의하였는 바, ①市郡判事制度, ②豫備判事の 業務內容, ③大法院의 法律案 提出要請權, ④法院의 豫算案에 대한 特例, ⑤特許訴訟의 審級構造改善, ⑥上告審에 관한 審理不續行制度和 採證法則違反과의 관계에 관하여 재검

7) 당시 委員長은 朴燾太 議員이었다.

토하기로 하였다.

b) 大法院은 그 후 第3次 小委員會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재 검토하여 가능한 한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上告審制度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사전 의견 조정을 통하여 修正案을 마련하였으며, 한편 上告審制度에 관하여는 第3次 小委員會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採證法則違背事由가 審理續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이 文言上 명백하도록 法律案의 관계 조항을 정리하여 修正案을 마련하였다.

c) 그리하여 1994년 7월 11일 10:30부터 11:30까지 개최된 第4次 小委員會에서는 위와 같이 大法院에서 수정한 法律案에 근거하여 정리된 起草資料에 관하여 심의하여 이를 小委員會의 法律案으로 확정짓고 法制司法委員會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上告審節次에 관한 審理不續行制度에 관하여는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한편 그 제도의 도입후 採證法則 위배, 審理未盡 등 사실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上告審 審理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우려가 표시되어, 이에 관한 大法院의 입장을 法院行政處長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밝히기로 하였다.

마. 法制司法委員會 法律案 議決

第169回 國會(臨時會) 第4次 法制司法委員會는 1994년 7월 12일 18:05부터 19:25까지 法制司法委員會 會議室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참석한 가운데 小委員會가 기초하여 成案한 위 6건의 法律에 관한 改正 및 制定案을 議事日程 第2項 내지 第6項으로 상정하여, 小委員會 委員長인 李仁濟 의원이 심사경과와 결과 및 위 法律들의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골자에 관한 보고후 大體討論을 가졌는 바, 그 토론 과정에서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案에 의하면 採證法則違背 등의 사유가 法令違反의 범주에 포함되어 審理續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표결을 거쳐 滿場一致로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써, 위 6건의 法律案 전부를 法制司法委員會의 司法制度改革關聯 法律案으로서 國會 本會議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國會 本會議 議決

a) 1994년 7월 14일 14:00 개최된 第169回 國會(臨時會) 第15次 本會議에서는 法制司法委員長의 명의로 제안된 위 6건의 司法制度改革關聯 法律案을 議事日程 第4項 내지 第9項으로 上程하여 심의하였다.

b) 먼저 議事日程 第4項 내지 第7項으로, ①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②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③各級法院判事定員法中改正法律案, ④法官의報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 일괄 상정되어, 李仁濟 의원이 위 각 法律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 아무런 이견 없이 與·野 滿場一致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c) 다음 議事日程 第8項 및 第9項으로 上告審節次에 관한特例法案, 行政訴訟法中改正法律案이 일괄 상정되어, 鄭璣浩 의원이 위 각 法律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 아무런 이견 없이 與·野 滿場一致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 司法制度改革法律 公布

a) 國會에서 통과된 6건의 司法制度改革關聯法律公布案은 1994년 7월 25일 제32회 國務會議에서 의결되어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의 副署를 거쳐 1994년 7월 26일 대통령이 同法律案에 서명하였고 法院行政處長, 國會法制司法委員長 및 法制處長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식을 거행하였다.

b) 이어 1994년 7월 27일 法律 第4,765號 내지 第4,770號로 다음과 같이 6건의 司法制度改革法律이 官報 第12,775號에 게재됨으로써 公布되었다.

- 法律 第4,765號 :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
(附則에 의하여 개정되는 法律 : 卽決審判에 관한節次法)
- 法律 第4,766號 :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
- 法律 第4,767號 : 各級法院判事定員法中改正法律
- 法律 第4,768號 : 法官의報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
- 法律 第4,769號 : 上告審節次에 관한特例法
(附則에 의하여 개정되는 法律 : 民事訴訟法)
- 法律 第4,770號 : 行政訴訟法中改正法律

Ⅲ. 司法制度改革法律의 要旨⁸⁾

1. 法院組織에 관한 事項

가. 市·郡法院의 設置

a)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管轄區域 안에 설치되어 있던 巡迴審判所를 모두 市·郡法院으로 개편하였다(法院組織法 第3條第2項, 第7條第4項, 第29條第3項 및 各級法院의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法律).

b) 市·郡法院은 巡迴審判所의 管轄 사건 이외에 戶籍法 第79條의2에 의한 協議上 離婚의 확인을 管轄하도록 하고, 卽決審判에 의할 刑事事件의 罰金 上限額을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 附則 第4條).

c) 처음에는 一般 判事 외에 市·郡法院에만 근무하는 市郡判事制度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法官 職級을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유보하고, 대신 地方法院 또는 地方法院 支院 소속의 判事 중에서 市·郡法院을 담당하는 判事를 大法院長이 지명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33條第1項).

나. 民·刑事地方法院의 區分の 廢止

a) 地方法院을 필요에 따라 民事事件만을 管轄하는 民事地方法院과 刑事事件만을 管轄하는 刑事地方法院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現行 制度를 폐지하여, 서울民·刑事地方法院을 서울地方法院으로 통합하였다(法院組織法 第3條第1項, 第2項, 第5條 내지 第7條, 第9條의2, 第10條, 第29條, 第

8) 理解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위 6건의 法律에 포함된 重要한 사항을 主題別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위 6건의 法律은 1994. 7. 27. 第12775號 官報에 게재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33條, 第55條第1項).

b) 그리고 이에 따른 서울地方法院 行政의 肥大化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등기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각 支院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31條第4項, 第36條).

다. 行政法院의 新設

法院의 종류로서 地方法院級의 行政法院을 신설하여 行政訴訟法에 의한 行政訴訟事件을 第1審으로 심판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3條, 第5條 내지 第7條, 第9條의2, 第10條, 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

라. 特許法院의 신설과 技術審理官制度의 도입

a) 法院의 종류로서 高等法院級의 特許法院을 신설하여 特許法 第186條 第1項, 實用新案法 第35條, 意匠法 第75條 및 商標法 第86條第2項이 정하는 第1審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3條, 第5條 내지 第7條, 第9條의2, 第10條, 第14條, 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

b) 特許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에 관한 訴訟의 심리에 참여하는 技術審理官制度를 신설하였다(法院組織法 第54條의2). 特許廳 및 辨理士會 등에서는 技術判事制度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이 제도는 결국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대신 特許事件의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技術審理官制度를 도입하였다.

c) 이와 관련하여 特許審判制度의 개선도 논의되었는 바, 이에 관하여는 현재 特許廳에서 特許法 등 관련법제에 관한 改正案을 成案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

마. 高等法院 部の 地方法院 소재지 근무

大法院長은 裁判業務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高等法院의 裁判部로 하여금 그 管轄區域 안의 地方法院 소재지에서 高等法院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27條第4項). 이는 현재 高等法院 소재지와 교통이 제일 불편한 濟州地方法院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바. 法院의 立法意見提出

大法院長은 法院의 組織, 人事, 運營, 裁判節次, 登記, 戶籍 기타 法院業務에 관련된 法律의 制定 또는 改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會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입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法院組織法 第9條 第3項).

사. 法院의 豫算獨立 尊重

a) 政府에서 法院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司法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法院組織法 第82條 第2項).

b) 당초 大法院에서는 政府에서 大法院의 歲出要求豫算額을 減額하는 경우에 大法院長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法院의 歲出要求 내용을 예산안에 附記하며 아울러 國會에서 그 액을 증액할 경우에 대비한 財源을 明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으나, 헌법상 豫算案의 편성권이 政府에 속하여져 있고 또한 國會 및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 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政府 특히 經濟企劃院으로 하여금 豫算案의 편성과정에서 현행 豫算會計法에 규정된 獨立機關에 관한 特例條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司法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宣言의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아. 判事會議의 設置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支院에 司法行政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判事會議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9條의 2). 이는 현재 大法院規則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法官會議를 입법화한 것이다.

자. 法院行政處의 업무 조정

法院行政處의 업무 중에 司法制度의 연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금년 7월

에 司法政策研究審議官室에서 개편된 司法政策研究室에서 본격적으로 司法制度 전반에 관한 연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法院組織法 第19條).

2. 人事制度에 관한 事項

가. 判事 職級の 폐지

a) 종래 高等法院長, 地方法院長, 家庭法院長과 高等法院部長判事 및 地方法院과 家庭法院의 部長判事, 高等法院 判事に 대하여 규정하던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여, 법률상 법관에는 大法院長, 大法官과 判事の 3개 직급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法院組織法 第42條).

b) 다만, 司法研修院長, 高等法院長, 特許法院長, 法院行政處次長, 地方法院長, 家庭法院長, 行政法院長과 高等法院 및 特許法院의 部長判事を 포함에 있어서는 法曹經歷 10년 이상을 요하도록 함으로써 補職概念으로 구분하였다(法院組織法 第44條第2項).

나. 豫備判事制度的 新設

a) 判事を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간 豫備判事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判事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法曹經歷 2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豫備判事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2第1項).

b) 豫備判事は 大法院長이 임명한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2第2項). 그리고, 그 수는 各級法院判事等定員法에 의하여 150명으로 정하였는 바, 1997년 1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50명씩 증원하도록 하였다(위 定員法 第2條, 附則).

c) 豫備判事は 各級法院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法院組織法 第42條의2第3項), 별정직으로 하며 그 보수는 법률로 정하되 判事に 준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2第4項).

d) 豫備判事は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勤務成績이 불량한 경우에

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法院組織法 第42條의2第5項), 豫備判事の 勤務期間은 判事の 在職期間에 산입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 2第6項).

다. 判事職務權限의 制限

a) 法曹經歷이 7년 미만인 判事は 辯論을 열어서 判決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少額事件과 卽決事件 및 다른 法律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 3第1項). 그리고, 法曹經歷이 7년 미만인 判事は 合議部の 裁判長이 될 수 없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3第2項). 이는 중전에 논의되던 判事任用資格의 強化 方案의 도입을 유보하는 대신 그 취지를 수용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b) 또한, 인력수급 등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大法院長은 各級法院의 業務處理上 필요한 경우에는 法曹經歷이 7년 미만인 判事로 하여금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두었다(法院組織法 第42條의3第3項).

라. 法官人事委員會 設置

a) 法官의 人事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人事運營을 위하여 大法院長의 자문기관으로서 法官人事委員會를 두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25條의 2第1項). 이는 현재 大法院規則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法官人事委員會를 立法化한 것이다.

b) 同 委員會는 法官 중에서 大法院長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25條의2第2項).

마. 勤務評定制度의 도입

大法院長은 判事 및 豫備判事の 勤務成績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人事管理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勤務評定制度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勤務成績評定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44條의2).

바. 法官의 派遣勤務 制限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 法官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法官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法官이 이에 동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派遣勤務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法官의 派遣勤務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50條).

사. 法官停年の 調整

종래 高等法院長, 司法研修院長인 判事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判事의 停年은 60세로 하던 것을 모든 判事의 停年을 63세로 조정하였다(法院組織法 第45條第4項).

아. 司法補佐官 制度의 導入

a) 判事の 사무 중 裁判 이외의 사무에 관하여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司法補佐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法院組織法 第42條의4), 大法院과 各級法院에 司法補佐官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54條第1項).

b) 司法補佐官은 判事の 사무 중 裁判 이외의 사무로서 法令에 의하여 委任된 사무, 審判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 업무, 家事訴訟法 및 少年法에 따른 조사업무 등을 행하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54條第2項).

c) 그리고, 大法院長은 다른 國家機關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을 法院의 司法補佐官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院組織法 第54條第3項).

d) 司法補佐官의 자격, 직제 및 그 수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法院組織法 第54條第4項), 결국 종래의 調査官制度는 司法補佐官으로 흡수되었다(附則 第5條第2項).

3. 裁判制度에 관한 事項

가. 單獨判事の 審判範圍擴大

合議部에서 심판할 수 있는 刑事事件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單獨判事が 재판할 수 있는 심판 범위를 확대하였다(法院組織法 第32條).

나. 上告審節次에서의 審理不續行制度的 導入

a) 民事訴訟·家事訴訟 및 行政訴訟(特許訴訟을 포함함)의 上告事件에 적용되는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을 제정하였다.

b) 위 特例法의 核心은 審理不續行制度에 있다.

審理不續行制度는 上告理由에 중대한 法令違反에 관한 사항 등 民事訴訟法상의 실질적인 上告理由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判決로 上告를 기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그 豫測可能性 및 法的安定性을 도모하기 위하여 法律에 審理不續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第4條第1項).

그리고, 上告理由에 중대한 法令違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上告理由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또는 原審判決과 관계가 없거나 原審判決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第4條第3項).

c) 審理不續行의 사유로 인한 上告棄却判決 및 上告理由書의 不提出로 인한 上告棄却判決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上告人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절차를 簡易化하였다(第5條).

d) 審理不續行의 사유로 인한 上告棄却判決은 大法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裁判部에서 大法官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第6條第1項).

e) 審理不續行의 사유로 인한 上告棄却判決을 할 수 있는 기한을 上告記錄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로 제한함과 아울러 民事訴訟法에 규정되어 있는 判決宣告期間을 5월 이내로 변경하였다(第6條第2項 및 附則 第3項).

f) 위 特例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特許訴訟의 上告事件에 대하여는 特許訴訟의 審級構造가 개선되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附則 第1條).

다. 行政訴訟의 審級構造

a) 行政訴訟의 第1審 管轄法院을 신설되는 지방법원급의 行政法院으로 변경하였다. 즉, 行政訴訟의 第1審 管轄法院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行政法院으로 하되, 中央行政機關 또는 그 長이 피고인 경우에는 大法院 所在地의 行政法院으로 하였고(行政訴訟法 第9條第1項), 不動產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行政訴訟은 그 不動產所在地 또는 場所所在地를 관할하는 行政法院에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行政訴訟法 第9條第2項).

b) 行政審判을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前置節次로 하되, 다른 法律에 필요적으로 行政審判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前置節次로 인정하였다(行政訴訟法 第18條第1項).

c) 行政審判의 임의적 前置化의 원칙에 따라 取消訴訟의 提訴期間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였고(行政訴訟法 第20條第1項, 第2項), 필요적으로 前置節次를 거치는 경우와 그 밖에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行政廳이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行政審判請求가 있었던 때의 提訴期間은 裁決書의 正本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였다(行政訴訟法 第20條第1項 但書).

d) 行政訴訟의 審級構造 개선은 다른 法律의 정비와 追加所要法官의 충원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行政訴訟法 附則 第1條).

라. 特許訴訟의 審級構造

特許訴訟의 審級構造를 개선하여 高等法院級의 特許法院으로 하여금 特許訴訟의 事實審을 담당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는 法院組織에 관한 사항 중 特許法院의 신설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4. 主要事項別 施行時期

이상으로 설명한 司法制度改革立法의 주요사항을 각 시행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94. 9. 1. 시행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上告審節次에 관한 審理不續行制度 | · 上告審節次에 관한特例法 |

(단, 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 訴訟의 上告事件 : 1998년 3월 1일 施行)

나. 1995년 3월 1일 시행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서울民·刑事地方法院의 統合 | · 法院組織法 第3條, 第10條第1項 ·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法律 第3條 |
| ○ 登記所에 대한 指揮監督權 이관 | · 法院組織法 第31條第4項, 第36條 |
| ○ 高等法院 部の 地方法院 所在地 근무 | · 法院組織法 第27條第4項 |
| ○ 法院의 立法意見 제출권한 | · 法院組織法 第9條第3項 |
| ○ 法院의 豫算獨立 존중 | · 法院組織法 第82條 |
| ○ 判事會議의 立法化 | · 法院組織法 第9條의2 |
| ○ 司法制度 研究業務 | · 法院組織法 第19條 |
| ○ 判事職級の 폐지 | · 法院組織法 第42條 |
| ○ 判事 및 豫備判事 증원 | · 各級法院判事定員法 |
| ○ 法官人事委員會 設置 | · 法院組織法 第25條의2 |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法官勤務評定制度의 도입 | · 法院組織法 第44條의2 |
| ○ 法官의 派遣勤務 제한 | · 法院組織法 第50條 |
| ○ 法官停年의 상향조정 | · 法院組織法 第45條第4項 |
| ○ 刑事合議 事物管轄의 축소 | · 法院組織法 第32條第1項 |

다. 1995년 9월 1일 시행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市·郡法院의 설치 | · 法院組織法 第33條 ·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法律 第2條 |
| ○ 卽決事件 罰金額의 상향조정 | · 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 |

라. 1997년 3월 1일 시행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豫備判事 制度의 실시 | · 法院組織法 第42條의2 |
| ○ 法曹經歷 7년 미만 判事의 직무권한 제한 | · 法院組織法 第42條의3 |

마. 1998년 3월 1일 시행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行政訴訟의 3審化 | · 行政訴訟法 第9條第1項 |
| ○ 行政事件의 임의적 前置 | · 行政訴訟法 第18條第1項 |
| ○ 서울行政法院의 新設 | · 法院組織法 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 |

| 주요 사항 | 관련법률 |
|---------------------------|--------------------------|
| ○ 特許訴訟의 審級構造改編 및 特許法院의 신설 | · 法院組織法 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 |
| ○ 技術審理官制度의 도입 | · 法院組織法 第54條의2 |

바. 大法院 規則에 위임

| | |
|---------------|----------------------|
| ○ 司法補佐官制度의 新設 | · 法院組織法 第42條의4, 第54條 |
|---------------|----------------------|

IV. 司法制度改革立法의 特徵

1. 역사적인 改革作業

이번의 司法制度改革立法은 1895년 甲午改革時 裁判所構成法이 시행됨으로써 近代司法制度가 시작된 후 100년만에 처음으로 추진된 자주적인 司法制度改革作業으로서, 21세기에 다가올 國際化, 開放化 시대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紛爭解決制度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2. 범국민적인 司法制度改革作業

그리고, 위 司法制度改革立法은 범국민적으로 구성된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建議案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짐으로써, 각계 각층의 다양한 國民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즉, 司法制度發展委員會는 法曹의 專門性과 國民一般의 社會通念을 조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法官을 비롯한 辯護士 資格이 있는 인사 16명 및 學界, 言論界 등을 비롯한 社會 一般人 인사 1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활

동하여 建議案을 마련하였고, 또한, 각종 公聽會,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法律案을 성안함으로써, 國會에서 與·野 國會議員의 滿場一致로 통과될 수 있었다.

3. 가장 모범적인 制度改革作業

또한, 이번의 司法制度改革作業은 제도의 개혁에 관한 하나의 모델(model)을 이룰 정도로 모범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大法院은 1990년 3월에 法院行政處 내에 司法政策研究審議官室을 설치하여, '우리 사회에 알맞는 司法制度'와 '21세기에 대비한 司法制度'를 만들기 위한 연구작업을 실시하여 총 10권의 司法政策研究資料를 발간하였고,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研究室은 이와 같이 집적된 연구결과를 흡수하는 한편 우리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外國의 立法例 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함으로써 司法制度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開放型意見調查, 常設簡易法院의 설치에 관한 意見調查, 審議對象 案件에 대한 法官 및 기타 法曹職域의 意見調查, 全國의 法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또한 大法院 스스로 司法制度發展方案에 관한 公聽會를 개최하고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公聽會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능동적으로 專門職域 및 利害關係集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4. 자율적·능동적인 改革

이번의 司法制度 改革作業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司法府 外部機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改革이 아니라, 司法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改革이라는 점에 있다. 즉, 司法府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을 위한 司法府가 될 수 있도록 司法府의 기틀을 새로이 다지자는 大法院長의 강한 改革意志와, 이를 뒷받침한 法官 및 法院 公務員 등 司法府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5. 司法府에 대한 새로운 認識의 擡頭

그 동안 司法府는 수동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자주적 능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잘못된 일부의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改革作業을 통하여 司法府 그리고 法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問題點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스스로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司法府의 참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6. 국민적인 共感帶 形成

이처럼 司法府가 국민을 위하여 제도를 개혁한다는 자율적인 노력에 대하여, 輿論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司法府에 관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司法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 그리고 차선의 방안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국민적인 共感과 認識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官에서 제창한 改革作業이 이처럼 높은 정도의 호응을 얻어 國民的 共感帶 形成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드물다 할 것이며, 이는 그만큼 司法制度의 改革作業이 갖는 重要性和 國民의 關心度를 반영하는 것이다.

V. 結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활동부터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온 가장 중요한 명제는 國民을 위한 司法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國民에게 편리한 司法制度를 마련하고, 國民이 신뢰할 수 있는 裁判制度를 정비하며, 國民에게 봉사하는 司法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에 알맞게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바로 國民의 司法府가 되려는 것이 이번 司法制度改革作業의 기본 방향이었다.

그 동안 추진된 司法制度改革作業의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國

민에게 유익한 改革作業이었는데가에 관하여는, 후에 歷史家들에 의하여 평가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1993년 11월 3일 司法制度發展委員會의 구성에서부터 1994년 7월 27일 司法制度改革法律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지지는, 이번의 司法制度 改革作業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司法府는 국민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을 계기로 더욱 國民을 위한 司法府가 될 수 있도록 倍前의 努力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위 法律들의 施行을 위한 諸般 規則의 정비 등 後續措置 또한 그 延長線上에서 추진될 것이다.